



슬레이트 처리사업 신청 및 철거절차



주민신청(상시)

(시·군·구 또는 읍·면·동)



대상자 선정

(시·군·구)



대상자 통보

(시·군·구 ▶ 주민)

수요신청
(시·군·구 ▶ 시·도
▶ 환경부)
[전년도 4월]



확정물량 및
예산통보
(환경부 ▶ 시·도
▶ 시·군·구)
[1월 - 2월]



지침시달 및
국고교부
(환경부 ▶ 시·도
▶ 시·군·구)
[1월]



정산보고
(시·군·구 ▶ 시·도
▶ 환경부)
[사업완료 후 30일 이내]



실적평가
(환경부)
[익년 1월]



사업시행
연계조사, 철거진행
(시·군·구 담당자 방문 또는 119차량)
[2 - 12월]

슬레이트 철거비 지원안내

철거비용 때문에
아직도 슬레이트 지붕아래
살고 계십니까?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철거**를 통해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 갑니다.



슬레이트 정부대책

슬레이트는 왜 철거·처리하여야 하는지요?

슬레이트는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석면이 10~15% 함유되어 있는 대표적인 고함량 석면 건축자재이기 때문입니다.

전국에 슬레이트 건축물은 얼마나 되며, 정부의 처리대책은 어떤가요?

141만동이며 주거용이 73만동을 차지하고 있고, 2021년까지 약 19만동의 노후된 주택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택외 비주거 건축물의 슬레이트 철거도 지원하나요?

주택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으며, 공장, 축사 등 비주거용의 지원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입니다.

슬레이트 지붕을 개인이 철거할 수 있나요?

슬레이트는 석면이 함유되어 지정폐기물로 관리되고 있으며, 석면비산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철거될 수 있도록 석면해체 제거업자를 통해 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석면해체·제거업자와 동등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스스로 해체·제거 가능

'16년도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사업 안내

지원
대상

• 슬레이트로된 주택지붕 및 벽체 건축물 소유자
※ 1가구에 대해서만 지원

지원
범위

• 슬레이트 철거, 운반, 처리에 드는 비용

지원
금액

• 가구당 최대 336만원
※ 지역여건에 따라 면적에 관계없이 철거비 전액 지원 가능

슬레이트 철거·처리

슬레이트를 철거할 경우
정부에서는 어떤 지원을
하는지요?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에게 슬레이트 철거·처리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여건에 따라 철거비 전액지원 합니다.

신청 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시·군·구(환경 및 건축관련) 및 읍·면·동 사무소(주민자치센터)에 신청하면 적격 여부 등을 판단하여 슬레이트 지붕철거 대상자로 결정됩니다.

※ 정기 신청(1월말), 수시(연중)상 편성하여 자부담 최소화

슬레이트 처리사업
지원대상에 부속건물도
지원 가능한가요?



주택부지내에 위치하거나 주택부지와인접하여 위치한 보관창고, 개인축사 등은 부속 건물에 포함되어 지원 가능합니다.